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위험) 1 <u>6</u> 매우 매우 <u> 다소</u> 높은 보통 <u>높은</u> 위헊 <u>높은</u> 위험 낮은 <u>위험</u> 위험 위험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편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KODEX 국고채3년 중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KODEX 국고채3년 중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파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

지 참조

4. 작성기준일 : 2024. 6.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 8. 2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

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한국거래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숭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3. 모집 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재무상태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라. 채권평가회사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 보고서
 - 나. 수시 공시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투자
 - 나. 투자목적의 투자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 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 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 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9. 이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증권시장 및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결제주기가 매매일로부터 제3영업일이며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설정/환매하는 경우 그 결제주기가 매매일로부터 제2영업일이므로 거래 방법에 따라 결제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동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거래시 거래방식에 따른 결제주기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6.30)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펀드 코드: 14938)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위험) 5 <u>6</u> 1 <u>매우</u> 매우 <u> 다소</u> 보통 낮은 낮은 <u>높은</u> 높은 <u>위험</u> 위험 <u>위험</u> 위험 위험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mark>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mark>을 감안 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을 변동위협, 기초지수 구성종목 교체에 따른 종목교체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정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3년 국채선물 최근월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국고채권 3종목을 기초로 산출되는 'MKF 국고채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투자비용

| 명칭 | 투자자가 부딤 | 하는 수수료 | ., 총보수 ! | 및 비용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 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 보수 •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없음 | 0.1500% | 0.001% | | 0.1686% | 17 | 34 | 52 | 91 | 208 | |

- (주1)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3)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rd =1 | 키크 시디어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심기이시호 |
|-----------------------------------|------------|-----------------------|-----------------------|-----------------------|-----------------------|-------|
| 명칭 | 최초설정일 | 23/07/01~ 24/06/30 | 22/07/01~ 24/06/30 | 21/07/01~ 24/06/30 | 19/07/01~ 24/06/30 | 설정일이후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 장지수투자신탁[채권] | 2009-07-28 | 4.60 | 3.87 | 1.32 | 1.22 | 2.66 |
| 비교지수(%) | 2009-07-28 | 4.76 | 4.09 | 1.51 | 1.48 | 2.90 |
| 수익률 변동성(%) | 2009-07-28 | 1.66 | 2.75 | 2.74 | 2.25 | 1.76 |

- 비교지수 : [MKF국고채]*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 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편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비범해 편드의 손성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명 | | | 운용현황 |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 | | | Ф. Q |
|-----|------|---------------|------|---------|-------|-------------------------|-------|----------------|--------|
| | 생년 | 직위 | 집합투자 | 0.07.11 | 운용역 | | 운성 | 운용사 운용 경력년수 | |
| | | | 키구 수 | 운용규모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정현 | 1998 | 책임(Associate) | 5개 | 4,141억원 | 4.46% | 7.95% | 5.19% | 8.48% | 1년 6개월 |

운용전문 인력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시장위험 및 개벽위헌 | 투자신탁재산을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 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주요투자 위험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헌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상장폐지위험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주요투자 위험 |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 내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 나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니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상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 | | | | |
| |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 형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 수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 사. | | | | | | |
| | 개인투자자 : 장내 ¤ 법인투자자 : 장내 ¤ | | | | | | | |
| 환매 수수료 | 없음 | 방법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 | | | | | | |
| | 공시장소 | 의사 또는 시청참가회사 영합점, 합합주사합사(http://www.samsungrund.com) · 판매회사 또는 시청참가회사 · 한국금 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 | | | | | | |
|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
| 과세 | 집합투자7 수익자 | 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 천경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계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이연판매보수(CDSC) 해당사항없음 전환형 구조 해당사항 없음 | 적용기준 및 내용 | | | | | | |
|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 · (대표전화: 1533-0300) | | | | | | |
| 모집기간 |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mark>모집 · 매출</mark> 경액 참액 10조좌 | | | | | | | |
| 효력발생일 | 2024. 8. 2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http:/ | 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 | |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펀드코드 |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4938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_ 상장지수투자신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모집기간 |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
| 모집장소 |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2,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 (1) 규모요건 :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좌 이상 일 것
-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 (3) 자산구성방법
 -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 ② 중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 ③ 위의 ①또는 ②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 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또는 ②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 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 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 요건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 (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장시장명칭 | 한국거래소 |
| 상장(예정)일 | 2009. 7.29 |
| 거래방법 |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펀드코드 |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4938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09. 7.28 | 최초 설정 |
| 2017. 5.22 | 투자신탁명 변경(삼성KODEX국고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삼성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2019. 2.28 | 운용역 변경(김남기 운용역 → 박성철 운용역) |
| 2021. 5.18 | 운용역 변경(박성철 운용역→이태규 운용역) |
| 2021.12.30 | 설정환매 방식(현물 → 현금) 및 설정단위(1CU당 6,000좌 → 2,000좌) 변경 |
| 2022.12.12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 신한아이타스) |
| 2024. 3.21 | 운용/판매보수 조정, 투자대상자산(환매조건부매도) 추가, 운용역 변경(이태규 운용역 → 김정현 운용역)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회 | 사 | 명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
|-----|-----|-------|---|
| 주 소 | 및 Q | 면 락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1533-0300)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 | | <u>순</u> | 용현황 | | 동종집합 연평균 수 | 투자기구 익률(채권) |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직위 집합투자 기구 수 | | 운용역 | | 운용사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 | | 기구 수 | 운용규모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정현 | 1998 | 책임(Associate) | 5개 | 4,141억원 | 4.46% | 7.95% | 5.19% | 8.48% | 1년 6개월 | | | |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김정현 | 2023년 01월 ~ 現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 |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 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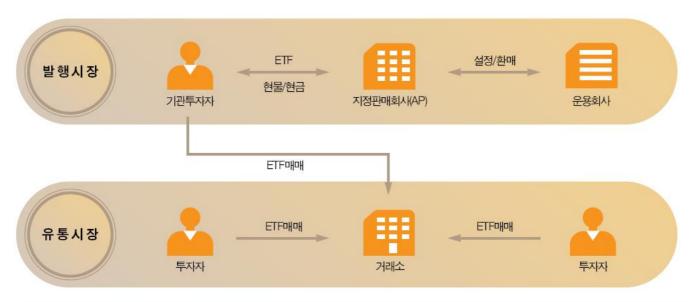
| 운용역 | 운용 기간 | | |
|-----|-------------------------|--|--|
| 이태규 | 2021. 5.18 ~ 2024. 3.20 | | |
| 김정현 | 2024. 3.21 ~ 현재 | | |

주1) 2024. 8. 2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나.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가. 이 투자신탁은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이하 "추적대상지수"라 한다)를 추적대상 지수로 하여 1좌 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 나. 추적대상지수 :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 x 100%
- 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추적대상지수가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추적대상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추적대상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u>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u>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 투자대상 투자비율 |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
| 1) | 채권 | 60% 이상 |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 또는 법 시행령 제179조, 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 | |
| 2) | 어음 | 20% 이하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 | |
| 3) | 집합투자증권 | 2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 | |
| 4) | 장내파생상품 | , -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 록 함 | | |
| 5) | 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 -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 | |
| 6) | 환매조건부 매도 | 50% 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0% 이내로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 | |
| 7) | 증권의 대여 | 50% 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의 50% 이내로 증권의 대여 가능 | | |
| 8) |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 | |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희생절차 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의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호 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예외 |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 |
| 파생상품매매 |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
| 사모집합투자증권 | | |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 |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

|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 | |
|---------------------|---|--|
| | 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 투자한도 초과 |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 | |
| 종목구성제한 |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행위 | |
| 추적대상제한 |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 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 |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 |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 (1)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의 성과를 추적하고자 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KF 국고채 지수 (총수익)를 완전 복제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2) 추적대상지수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의 소개
 - 1) 지수의 개요
 - ①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3년 국채선물 최근 월물의 기초자산이 되

는 국고채권 3종목을 대상으로 에프앤가이드(FnGuide, 홈페이지 www.fnguide.com)가 금융투 자협회가 수집하는 실시간 체결가 및 매수/매도 호가를 이용하여 실시간 산출하는 지수입니 다.

- ② 자본손익, 경과이자 및 이자 재투자손익을 감안한 총수익에 관한 지수임.
- 2) 지수 산정 방법 등
 - ① 최초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4년 6월 16일 종가, 100.00pt(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② 지수구성방식 : 동일 액면 비중
 - ③ 정기변경 : 연 4회(3, 6, 9, 12월의 각 10일, 비영업일 경우에는 익일)
 - ④ 듀레이션(Duration), 컨백서티(Convexity) 등이 보조지수로 발표되며 지수의 발표 주기는 매1분입니다.
 - ⑤ 지수의 듀레이션은 2.5 ~ 3년 내외

(3)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 기본적으로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의 구성종목을 완전 복제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수구성종목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증권의 대여 등 동 증권신고서(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 사유

- 1) 집합투자업자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 수익률을 추적대상지 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입니다.
- 2)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동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납부자산구성내역 (PDF, Portfolio Deposit File)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①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②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5) 에프앤가이드(Fnguide, 홈페이지 www.fnguide.com)가 발표하는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를 추적대 상지수로 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지수의 변경을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 x 100%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 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 다. | |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상장폐지위험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

|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
|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 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 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차익거래 불가능위험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역을 재조정(리밸런싱, Rebalancing)할 경우 리밸런싱 시점과 국채선물 만기일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국채선물과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종 보유자에 대한 과세 |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등의 소득등은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투자신탁 분배금으로 지급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투 자신탁 분배금 수취시점에 수익증권 최종 보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 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종목교체 위험 |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은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전체 3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교체됩니다.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종목에 불과하여 추적대상지수를 추적함에 있어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 변경시 교체때대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 , |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유동성 위험 |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 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신탁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

| |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 |
|-------------|---|
| 투자신탁 소규모의 | 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 |
| 위험 | 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인덱스 바스켓의 구성이 어려워져 지수의 추 |
| | 적이 곤란하거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의 대여 또는 차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 |
| 입거래 위험 | 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
| 합기대 취임 |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의 성과를 추적하고자 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KF 국고채 지수(총수익)를 완전 복제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1)}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5% VaR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 매우높은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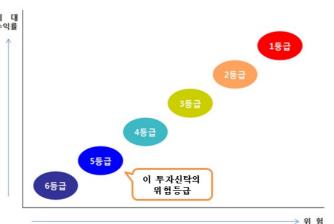
2등급 :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 보통위험

5등급 :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시장위험등급 기준표>

| 등급 | 1등급 (고위험)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저위험) |
|-------|--------------|-----|-----|-----|-----|--------------|
| 97.5% | 50% | 50% | 30% | 20% | 10% | 1% |
| VaR | 초과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주1)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신뢰수준 97.5%)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하여 등급 기준표상의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5.43% 입니다.
- 주3)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외화표시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인버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및 환변동성 노출여부에 따라 위험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입
 - 1)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2) 지정참가회사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 1)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지정참가회사
 -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 (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입금 등)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2,000좌 또는 그 정배수(4,000좌, 6,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 설정단위(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ETF(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 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납입금등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기타 수익증권 매입 관련 사항
 - 1)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 전까지 중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 2)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4) 설정절차

-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 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 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 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4) 위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 당일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위 1)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교체의 경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 여야 함
 - ② 지수 편입종목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지수 편입종목의 이자지급일 및 이자지급일 전 제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지수 편입종목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 지수 편입종목의 이자지급일 및 이자지급일 전 제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위 5)에서 규정된 구체적 사유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 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 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합니 다.

(5)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 | T-1 | Т | T+1 |
|---------|----------------------------|-----------------|---|
| 투자자 | |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 설정자금 납입, 정산금액 존재시 ,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
| 지정참가회사 | |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 인수도명세 확인 및 수익자 통보(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신청) , 신탁회사로 납부금등 이체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이체에 의한이체) |
| 집합투자업자 |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 수익증권 발행(한국예탁결제원 일괄 예탁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
| 한국예탁결제원 | |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
| 신탁업자 | | |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

(6) 종류별 가입자격

- 해당사항 없음
- (7)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해당사항 없음
- (8)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4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
 - 1)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매도 가능.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 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2)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법인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환매 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환매)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탁의 환매 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절차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 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 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 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 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는 1)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위 1) 및 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5) 위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위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위 2) 내지 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 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 당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8) 위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10) 위 1) 내지 9)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7)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 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 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1) 위 10)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12) 위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 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 ② 지수 편입종목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 지수 편입종목의 이자지급일 및 이자지급일 전 제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 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 ④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3) 위 12)의 구체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4)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 | T-1 | T | T+1 |
|---------|----------------------------|------------------|--|
| 투자자 | |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청구 |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
| 지정참가회사 | |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요구 | 인수도명세 확인 및 수익자 통보(집합투 자업자는 증권시장에 변경 상장신청) ,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
| 집합투자업자 |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 환매내역 확인 | 투자신탁 일부해지 |
| 한국예탁결제원 | |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
| 신탁업자 | | |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이체) 및 이체 확인 |

(5)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6)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4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7)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 | | | | | |
|--------------------------------|------------|---------|--|--|--|--|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가능 | | | | |

다. 실물 입·출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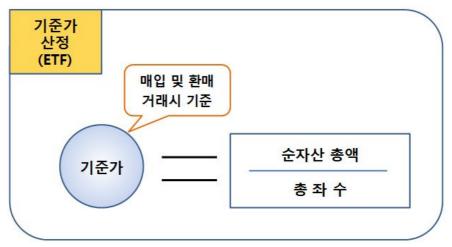
-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 |
|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 해당사항 없음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 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 |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 | | | |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 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
|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수익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수익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
|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 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되는 가격)으로 평가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 | | | | | 지급비율 | (연간,%) | | | | |
|-----------------------------------|---------------------------------------|--|------------|--------------------|------|-----------|--------------|--------------|--|------------|
| 명칭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지정참가 회사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 비용 | 동종유형 총 보수 | 총 보수 · 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채권] | 0.124 | 0.001 | 0.01 | 0.015 | 0.15 | 0.0186 | 0.1686 | - | 0.1686 | 0.0036 |
| 지급시기 | (이자지) 이자지를 기준일이 휴일인 2 업일이 | 국고채권 이자지급 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 (이자지급 기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이자지급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이 이자지급 기준일이 되며, 이자지급 기준일이 법정 공 휴일인 경우에는 이자지급 기준일의 다음 영 업일이 이자지급 기준일이 됨)을 지급 기준 일로 하여 제7영업일 이내 지급 |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12,191 |

-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
|------|-----------------------|
| 금융비용 | _ |

-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 명칭 | 투자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6,862 | 34,176 | 52,357 | 91,490 | 207,784 |
| 장지수투자신탁[채권]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6,862 | 34,176 | 52,357 | 91,490 | 207,784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 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식재산권 비용
-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
- 10)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 11)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 12)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기준지표 | 보수 산정방식 | 한도 (%) | 산출 주기 | 지급시기 |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 |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_ | _ | - | - | - | - | _ | _ | - |

14.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분배금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 국고채권 이자지급 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이자지급 기준일이 금융기관 휴무

일인 경우 이자지급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이 이자지급 기준일이 되며, 이자지급 기준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자지급 기준일의 다음 영업일이 이자지

급 기준일이 됨)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5)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지급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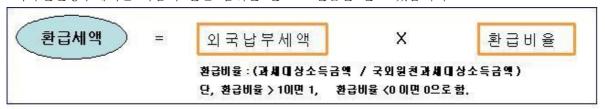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 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 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 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 재무성 | 사태표 | |
|----------|-----------------|-----------------|-----------------|
| 항 목 | 제 15기 | 제 14기 | 제 13기 |
| 8 = | (2024.06.10) | (2023.06.10) | (2022.06.10) |
| 운용자산 | 385,529,486,710 | 251,271,070,859 | 112,711,282,181 |
| 증권 | 379,241,435,834 | 244,807,033,351 | 110,848,271,286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6,288,050,876 | 6,464,037,508 | 1,863,010,895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63,672,369,955 | 77,278,217,751 | 38,779,369,576 |
| 자산총계 | 449,201,856,665 | 328,549,288,610 | 151,490,651,757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63,628,097,600 | 75,921,603,677 | 36,495,717,728 |
| 부채총계 | 63,628,097,600 | 75,921,603,677 | 36,495,717,728 |
| 원본 | 334,218,940,500 | 226,957,978,200 | 106,120,990,720 |
| 수익조정금 | 1,347,713,679 | 1,831,506,314 | 106,417,301 |
| 이익잉여금 | 50,007,104,886 | 23,838,200,419 | 8,767,526,008 |
| 자본총계 | 385,573,759,065 | 252,627,684,933 | 114,994,934,029 |

[단위 : 원, %]

| | 손익겨 | ∥산서 | |
|------------|---------------------------|---------------------------|---------------------------|
| 항 목 | 제 15기 | 제 14기 | 제 13기 |
| 8 = | (2023.06.11 ~ 2024.06.10) | (2022.06.11 ~ 2023.06.10) | (2021.06.11 ~ 2022.06.10) |
| 운용수익 | 12,790,848,666 | 5,135,391,207 | -3,824,026,953 |
| 이자수익 | 11,124,077,633 | 4,271,955,493 | 1,418,111,172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익(손) | 1,586,838,271 | 803,295,039 | -5,269,516,212 |
| 기타수익 | 79,932,762 | 60,140,675 | 27,378,087 |
| 운용비용 | 585,024,231 | 275,643,756 | 197,771,428 |
| 관련회사 보수 | 458,793,041 | 214,929,608 | 155,718,579 |
| 매매수수료 | 7,895,000 | 4,515,000 | 2,332,500 |
| 기타비용 | 118,336,190 | 56,199,148 | 39,720,349 |
| 당기순이익 | 12,205,824,435 | 4,859,747,451 | -4,021,798,381 |
| 매매회전율 | 0 | 0 | 0 |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 | 동종유형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B) | (A/B) | 평균 매매회전율 |
| 0 | 0 | 0 | 0 | 0 | 0.00 | 12.30 |

-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 157] | 147] | 137] | |
|--------------------------------|-------------------------|-------------------------|-------------------------|--|
| 1 1 | (2023. 6.11~2024. 6.10) | (2022. 6.11~2023. 6.10) | (2021. 6.11~2022. 6.10) | |
|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 80 | 60 | 27 | |
|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비용 등 포함 | 0 | 0 | 0 |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 | (202 | 당기 3. 6.11~2024. | 6.10) | 전기 (2022. 6.11~2023. 6.10) | | | |
|-------------------|-----------|---------------------|------------------|-------------------------------|-------|------------------|--|
| 구분 | | 거래비용 | | | 거래 | 비용 | |
| | 거래금액(A)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 (B/A) | 거래금액(A)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 (B/A) | |
| 주식 | 0 | 0 | 0.00 | 0 | 0 | 0.00 |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등) | 0 | 0 | 0.00 | 0 | 0 | 0.00 | |
| 부동산 | 0 | 0 | 0.00 | 0 | 0 | 0.00 | |
| 장내파생상품 | 317,442 | 8 | 0.00 | 186,713 | 5 | 0.00 | |
| 장외파생상품 | 0 | 0 | 0.00 | 0 | 0 | 0.00 | |
| 기타 | 1,002,546 | 4 | 0.00 | 427,686 | 1 | 0.00 | |
| 합계 | 1,319,988 | 12 | 0.00 | 614,399 | 6 | 0.00 | |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u>재 무 상 태 표</u>

[단위:원]

| _ | | 제15기(20: | 24.06.10) | 제14기(20 | 23.06.10) | 제13기(20 | [단위:원] 022.06.10) | |
|----------------------------|-------------|-----------------|------------------------------------|---------------------|------------------------------------|-------------------|------------------------------------|--|
| 과 목 | | 금 | 액 | | 액 | 금 액 | | |
| 자 산 | | | - 4 | | 4 | | - 4 | |
| 운 용 자 산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 6,288,050,876 | | 6,464,037,508 | | 1,863,010,895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5,424,535,400 | | 5,794,070,968 | | 1,445,290,155 | | |
| 2. 예치금 | | 0 | | 0 | | 0 | | |
| 3. 증거금 | | 863,515,476 | | 669,966,540 | | 417,720,740 | | |
| 다출채권 대출채권 | | | 0 | | 0 | | 0 | |
| 1. 콜론 | | 0 | | 0 | | 0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0 | | 0 | | 0 | | |
| 3. 매입어음 | | 0 | | 0 | | 0 | | |
| 4. 대출금 | | 0 | | 0 | | 0 | | |
| 유가증권 | | | 379,241,435,834 | | 244,807,033,351 | | 110,848,271,286 | |
| 1. 지분증권 | | 0 | | 0 | | 0 | | |
| 2. 채무증권 | | 349,821,212,134 | | 226,728,297,501 | | 109,601,914,911 | | |
| 3. 수익증권 | | 29,420,223,700 | | 18,078,735,850 | | 1,246,356,375 | | |
| 4. 기타유가증권 | | 0 | | 0 | | 0 | | |
| 파생상품 | | | 0 | | 0 | | 0 | |
| 1. 파생상품 | | 0 | | 0 | | 0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 0 | | 0 | - | 0 | |
| 1. 건물 | | 0 | | 0 | | 0 | · · | |
| 2. 토지 | | 0 | | 0 | | 0 | | |
| 3. 농산물 | | 0 | | 0 | | 0 | | |
| 4. 축산물 | | 0 | | 0 | | 0 | | |
| 기타운용자산 | | | 0 | | 0 | | 0 | |
| 1. 임차권 | | 0 | | 0 | Ü | 0 | v | |
| 2. 전세권 | | 0 | | 0 | | 0 | | |
| 기 타 자 산 | | , o | 63,672,369,955 | ŭ | 77,278,217,751 | | 38,779,369,576 |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60,771,453,819 | 03,072,309,333 | 75,445,200,000 | 11,210,211,131 | 38,542,921,507 | 36,119,369,310 | |
| 2. 정산미수금 | | 00,771,455,619 | | 20,800,000 | | 0 | | |
| 3. 미수이자 | | 2,900,916,136 | | 1,812,217,751 | | 236,448,069 | | |
| 4. 미수배당금 | | 2,900,910,130 | | 1,012,217,731 | | 230,440,003 | | |
| 5. 기타미수입금 | | 0 | | 0 | | 0 | | |
| 6. 기타자산 | | 0 | | 0 | | 0 | | |
| 0. 거리자근 7.수익증권청약금 | | 0 | | 0 | | 0 | | |
| 7.ㅜㅋㅎ건ㅎㅋㅁ 자산총계 | | | 449,201,856,665 | 0 | 328,549,288,610 | ١ | 151,490,651,757 | |
| 시민동계 | | | 449,201,630,003 | - | 320,349,200,010 | + | 131,490,031,737 | |
| 부 채 | | | | | | | | |
| 구 세 운용부채 | | | 0 | | 0 | | 0 | |
| 1. 옵션매도 | | | 0 | 0 | o o | | 0 | |
| 1. 답근에고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0 | | 0 | | 0 | | |
| 기타부채 | | 0 | 63,628,097,600 | ١ | 75,921,603,677 | ا | 36,495,717,728 |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CO 457 010 050 | 03,020,097,000 | 75 941 100 000 | 75,921,005,077 | 20, 440, 000, 000 | 30,493,717,726 | |
| 2. 정산미지급금 | | 63,457,218,850 | | 75,841,160,000 0 | | 36,449,980,000 | | |
| 3. 해지미지급금 | | 45,842,500 | | 0 | | 2,415,000 | | |
| 3. 에시미시답금 4. 수수료미지급금 | | | | | | 36,842,734 | | |
| 4. 구구표비시합금 5. 기타미지급금 | | 124,605,108 | | 73,672,315 | | 2,606,820 | | |
| 6. 기타부채 | | 431,142 | | 6,771,362 | | 3,873,174 | | |
| · 기의구제 부 채 총 계 | | 431,142 | 63,628,097,600 | 0,771,302 | 75,921,603,677 | 3,073,174 | 20 405 717 700 | |
| 구세 중계 | | | 03,028,097,000 | - | 75,921,005,077 | + | 36,495,717,728 | |
| 자 본 | | | | | | | | |
| 사 돈 1. 원 본 | | 224 010 040 500 | | 000 057 070 000 | | 100 100 000 700 | | |
| | | 334,218,940,500 | | 226,957,978,200 | | 106,120,990,720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2. 이왕이여구 | | 0 | | 0 05 000 700 722 | | 0 072 042 200 | | |
| 3. 이월잉여금 | 6.4E0.000 T | 51,354,818,565 | E0 005 101 005 | 25,669,706,733 | 00.000.000.47 | 8,873,943,309 | 0 808 500 000 | |
| (발행좌수 당기: | 6,450,000 좌 | 이익잉여금 | 50,007,104,886 | 이익잉여금 | 23,838,200,419 | 이익잉여금 | 8,767,526,008 | |
| 전기: | 좌 | 수익조정금 | 1,347,713,679 | 수익조정금 | 1,831,506,314 | 수익조정금 | 106,417,301 | |
| 전전기: | 좌) | | | | | | | |
| (기준가격 당기: | 59,779 원 | | | | | | | |
| 전기: | 원 | | | | | | | |
| 717191 | 원) | 1 | | | | | | |
| 전전기: | | + | - | F | | H | | |
| 전전기: 자 본 총 계 | _/ | | 385,573,759,065 | | 252,627,684,933 | | 114,994,934,029 | |
| | _/ | | 385,573,759,065 449,201,856,665 | | 252,627,684,933 328,549,288,610 | | 114,994,934,029 151,490,651,757 | |

다. 손익계산서

<u>손 익 계 산 서</u>

[단위:원]

| | 제 | 15기 | 제 · | 147 | 제 13기 | | |
|-------------------|----------------|----------------|---------------|---------------|---------------|----------------|--|
| 과 목 | | ~ 2024.06.10) | | ~ 2023.06.10) | (2021.06.11 - | | |
| _ ' | 금 | 액 | | 액 | | <u> </u> | |
| 운 용 수 익 | _ | | | | | • | |
| 1. 투자수익 | | 11,124,077,633 | | 4,271,955,493 | | 1,418,111,172 | |
| 1. 이 자 수 익 | 11,124,077,633 | | 4,271,955,493 | | 1,418,111,172 | | |
| 2. 배당금수익 | 0 | | 0 | | 0 | | |
| 3. 수수료수익 | 0 | | 0 | | 0 | | |
| 4. 임대료수익 | 0 | | 0 | | 0 | | |
| |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6,303,009,477 | | 5,891,910,208 | | 1,515,883,883 |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0 | | 0 | | 0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2,416,096,206 | | 3,558,521,660 | | 497,152,446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2,984,860,000 | | 2,079,740,000 | | 929,570,000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0 | | 0 | | 0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0 | | 0 | | 0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0 | | 0 | | 0 | | |
| 7. 기타거래차익 | 902,053,271 | | 253,648,548 | | 89,161,437 | | |
| | |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4,644,133,444 | | 5,032,989,494 | | 6,760,354,508 |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0 | | 0 | | 0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1,513,484,886 | | 3,056,476,076 | | 5,590,466,108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3,125,075,000 | | 1,946,335,000 | | 1,121,822,500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 0 | | 0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0 | | 0 | | 0 | | |
| 6. 대손상각비 | 0 | | 0 | | 0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0 | | 0 | | 0 | | |
| 8. 기타거래손실 | 5,573,558 | | 30,178,418 | | 48,065,900 | | |
| | | | | | | | |
| | | | | | | | |
| 운 용 비 용 | | 577,129,231 | | 271,128,756 | | 195,438,928 | |
| 1. 운용수수료 | 297,170,168 | | 119,405,462 | | 86,510,448 | | |
| 2. 판매수수료 | 127,638,340 | | 79,603,584 | | 57,673,568 | | |
| 3. 수탁수수료 | 33,984,533 | | 15,920,562 | | 11,534,563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0 | | 0 | | 0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0 | | 0 | | 0 | | |
| 6. 기타비용 | 118,336,190 | | 56,199,148 | | 39,720,349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12,205,824,435 | | 4,859,747,451 | | -4,021,798,381 | |
| | | | | | | |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1,892 | | 1,110 | | -1,964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 | | 기간초 잔고 | | | 회계기 | | 기간말 잔고 | | |
|----------------------|------------|---------|---------|----|---------|-----|---------|------------|-------|
| 머카 | 71 71 | 기신조 | 기간소 산끄 | | 설정(발행) | | | | 1H |
| 명칭 | 기간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 | (출자지분수)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D Э | (출자지분수) | Б Ч | |
| | 2023.6.11 | 0 | 2,270 | 0 | 4,166 | 0 | 2,069 | 0 | 3,342 |
| | ~2024.6.10 | · · | 2,210 | | 1,100 | O O | | | 0,012 |
| | 2022.6.11 | 0 | 1,061 | 0 | 3,976 | 0 | 1,899 | 0 | 2,270 |
|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상장지 | ~2023.6.10 | U | 1,001 | 0 | 0,570 | O | 1,000 | 0 | 2,210 |
| 수투자신탁[채권] | 2021.6.11 | 0 | 839 | 0 | 531 | 0 | 309 | 0 | 1,061 |
| | ~2022.6.10 | U | 000 | O | 0 331 | | 303 | O | 1,001 |
| | 2020.6.11 | 0 | 684 | 0 | 311 | 0 | 155 | 0 | 839 |
| | ~2021.6.10 | 1.6.10 | | U | 311 | U | 100 | U | 009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연도 | (23.07.01 ~24.06.30) | (22.07.01 ~24.06.30) | (21.07.01 ~24.06.30) | (19.07.01 ~24.06.30) | (09.07.28 ~24.06.30) |
| 투자신탁 | 4.60 % | | | | |
| 비교지수 | 4.76 % | 4.09 % | 1.51 % | 1.48 % | 2.90 % |
| 수익률변동성 | 1.66 % | 2.75 % | 2.74 % | 2.25 % | 1.76 % |

- 비교지수 : [MKF국고채]*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연도 | (23.07.01 | (22.07.01 | (21.07.01 | (20.07.01 | (19.07.01 |
| | ~24.06.30) | ~23.06.30) | ~22.06.30) | ~21.06.30) | ~20.06.30) |
| 투자신탁 | 4.60 % | 3.15 % | -3.60 % | -0.35 % | 2.49 % |
| 비교지수 | 4.76 % | 3.42 % | -3.47 % | -0.12 % | 2.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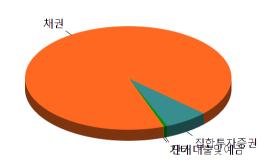
- 비교지수 : [MKF국고채]*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4.03.31 기준, 억원)

| | 증권 | | | |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 | | | 자산 | 단기 | | 1.1 | |
|-----|----|-------|----|----------------|----------------|----|----|-----|----------|----|---------|-----|----------|
| 통화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파생 결합 증권 | 장내 | 장외 | 부동산 | 실물 자산 | 기타 |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KRW | 0 | 3,555 | 0 | 268 | 0 | 0 | 0 | 0 | 0 | 0 | 20 | 0 | 3,844 |
| 합계 | 0 | 3,555 | 0 | 268 | 0 | 0 | 0 | 0 | 0 | 0 | 20 | 0 | 3,844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삼성자산운 | -용주식회사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
| | (연락처 : | 1533-0300, http://www.samsungfund.com) |
| | 1998.09.15 | 설립등기 |
| | 1999.12.29 |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 |
| | 2000.03.03 |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
| | 2000.03.30 |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 | 2001.11.05 |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
| | 2002.10.14 |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IF) KODEX200 상장 |
| | 2007.11.01 |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 |
| 회사 연혁 | 2010.02.22 |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 |
| 외사 현덕 | 2010.04.01 |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 |
| | 2011.08.26 |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 |
| | 2011.12.16 |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 |
| | 2014.07.21 |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 |
| | 2015.02.01 |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 |
| | 2015.03.31 |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CCIO) 선정 |
| | 2015.11.30 |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
| | 2015.12.01 | 관리자산 200兆 달성 |

| |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 | | |
|--------|--|--|--|--|
| | 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IF 상장 | | | |
| | 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 | | | |
| | 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 | | |
| | 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 | | |
| 회사 연혁 |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 | | |
| | 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 | | | |
| | 2017.09.08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 | | |
| | 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재선정 | | | |
| | 2019.12.02 B2C 직판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 | | | |
| | 2021.12.14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 | | |
| 자본금 | 934.3억 | | | |
| 주요주주현황 | 삼성생명보험(주)(100%) | | | |
| 사업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等권리 행사이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다여 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 |

주) 산정 기준일은 2024.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

제26(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5(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원)

| 과 목 | 당기 | 기말 | 전기 | l말 |
|-------------------------------|------------------|-----------------|-------------------|-----------------|
| 자 산 | | |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50,373,973 | | 44, 420, 915, 780 |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2,974,936,486 | | 97,933,558,860 | |
|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86,564,216 | | 1,239,205,000 | |
| N.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19,680,882,267 | | 115, 159,845,709 | |
| V. 종속기업투자 | 460,183,665,838 | | 450,556,397,033 | |
| И. 유형자산 | 2,194,413,084 | | 2,521,106,048 | |
| Ⅶ. 사용권자산 | 2,701,045,223 | | 7,893,139,600 | |
| VIII. 무형자산 | 31,642,525,922 | | 36,096,822,318 | |
| ⋉, 순확정급여자산 | 2,995,794,944 | | 2,448,241,248 | |
| X, 이연법인세자산 | 3,496,002,192 | | 2,611,134,462 | |
| XI, 기타자산 | 2,118,790,223 | | 1,620,090,260 | |
| 자 산 총 계 | | 870,424,994,368 | | 762,500,456,318 |
| 부 채 | | | | |
| I. 당기손익 · 공정가치금융부채 | 2,281,405,494 | | - | |
| Ⅱ. 예수부채 | 24,197,524,708 | | 7,201,895,088 | |
| Ⅲ. 기타금융부채 | 43,054,368,438 | | 41,868,572,767 | |
| №. 중당부채 | 306,241,023 | | 302,707,797 | |
| И. 당기법인세부채 | 22,574,126,099 | | 18,526,449,805 | |
| WI. 기타부채 | 6,335,565,213 | | 3,415,101,369 | |
| 부 채 총 계 | | 98,749,230,975 | | 71,314,726,826 |
| 자 본 | | | | |
| 1. 자본금 | 93,430,000,000 | | 93,430,000,000 | |
| Ⅱ. 자본잉여금 | 51,087,628 | | 51,087,628 |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098,748,037) | | (9,390,332,058) | |
| N. 이익잉여금 | 688,293,423,802 | | 607,094,973,922 | |
| 자 본 총 계 | | 771,675,763,393 | | 691,185,729,49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870,424,994,368 | | 762,500,456,318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6(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5(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원)

| 과 목 | 당기 | | 전기 | |
|-----------------------------|-----------------|-----------------|-----------------|-----------------|
| I. 영업수익 | | 282,808,463,807 | | 258,697,723,672 |
| 1. 수수료수익 | 261,883,354,576 | | 250,605,044,607 | |
|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 9,724,074,465 | | 4,879,942,599 | |
| 3. 이자수익 | 4,605,613,925 | | 1,946,657,373 | |
| 4. 외환거래이익 | 613,894,454 | | 360, 763, 158 | |
| 5. 배당금수익 | 5,981,526,387 | | 905,315,935 | |
| II. 영업비용 | | 178,160,283,319 | | 160,272,039,695 |
| 1. 수수료비용 | 27,996,996,429 | | 29,193,458,605 | |
|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 7,617,293,537 | | 2,508,817,350 | |
| 3. 이자비용 | 2,652,044,252 | | 1,352,279,992 | |
| 4. 외환거래손실 | 452,883,180 | | 740,698,730 | |
| 5. 판매비 | 11,439,848,385 | | 11,511,152,226 | |
| 6. 일반관리비 | 127,994,089,817 | | 114,959,304,318 | |
| 7. 기타비용 | 7,127,719 | | 6,328,474 | |
| III. 영업이익 | | 104,648,180,488 | | 98,425,683,977 |
| IV. 영업외손익 | | 5,063,705,775 | | 7,350,713,081 |
| 1. 영업외수익 | 8,349,120,170 | | 7,641,619,529 | |
| 2. 영업외비용 | 3,285,414,395 | | 290, 906, 448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109,711,886,263 | | 105,776,397,058 |
| VI. 법인세비용 | | 28,513,436,383 | | 28,463,329,277 |
| VII. 당기순이익 | | 81,198,449,880 | | 77,313,067,781 |
| VIII. 기타포괄손익 | | (708,415,979) | | (1,409,733,12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08,415,979) | | (1,409,733,129) |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68,576,354) | | (2,150,278,054)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352,640,784) | | 286,689,630 | |
|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의 법인서 | 212,801,159 | | 453,865,295 | |
| IX. 당기총포괄이익 | | 80,490,033,901 | | 75,903,334,652 |
| X. 주당순이익 | | | | |
| 1. 기본주당순이익 | | 4,345 | | 4,137 |

라. 운용자산규모

(2024. 6.30 현재/억좌)

| | | | 증권 | | | | | | | |
|-----|---------|-------|---------|----------|---------|---------|--------|-------|--------|-----------|
| 구분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 상품 | 재간접 | MMF | 특별자산 | 부동산 | 혼합자산 | 총계 |
| 수탁고 | 242,172 | 9,785 | 188,468 | 279,943 | 670,758 | 234,267 | 92,793 | 2,163 | 18,585 | 1,738,934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 회사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hsbc.co.kr |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 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 회사명 | 신한펀드파트너스 |
|----------------------|--|
| 1 - 우수 및 역탁제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전화번호 : 02)2180-0400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fundpartners.com |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2)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KAP) | 나이스피앤아이(주) | KIS자산평가 | 에프앤자산평가(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현대빌딩) TEL: 02-2251-13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 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2층, 3층 TEL: 02-721-5300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 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는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 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 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 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3)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
| 증권의 거래 |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 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 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 |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어 | 내용 | | |
|----------------|----|--|--|
|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